

연구논문 심사규정

1. 이 규정은 부식학회지에 게재하고자하는 연구논문 및 이에 준하는 원고에 적용한다.
2.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을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편집위원 또는 외부인사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저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의 창의성, 합리성,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명시한 의견서를 15일 이내에 편집이사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이 '부'인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4. 논문은 심사위원의 판정이 '가'인 경우에만 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판정이 '부'인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위촉하여 두 심사의견이 다른 때에는 편집이사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심사의견이 '수정후 채택'인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확인, 채택한다. 편집이사는 심사위원과 저자간의 의견교환을 중개 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6. 이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